

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-1039호

「도심항공교통 실증사업구역 지정, 변경 및 해제에 관한 기준」을 제정하기 위하여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7월 12일

국 토 교 통 부 장 관

「도심항공교통 실증사업구역 지정, 변경 및 해제에 관한 기준」

제정 고시안 행정예고

1. 제정이유

도심항공교통의 도입·확산, 활용·촉진 및 지원을 위해 「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(법률 제19768호, 23. 10. 24. 공포, 24. 4. 25. 시행) 및 하위법령이 제정·시행됨에 따라, 원활한 도심항공교통 실증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구역의 지정·변경 및 해제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 및 하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실증사업구역의 지정 기준(안 제2조 및 별표)

도심항공교통 실증사업구역을 지정하기 위해 공역 및 전파·기상환경, 부지, 기반시설, 지역수용성, 접근성에 대해 검토하도록 정하고, 각 분야별 세부사항을 별표로 규정함

나. 실증사업구역 지정 후 사후관리(안 제3조)

지정된 실증사업구역의 지정 기준을 충족하는 사항의 변화가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알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시·도지사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

3. 의견제출

「도심항공교통 실증사업구역 지정, 변경 및 해제에 관한 기준」 제정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.7.22까지 국토교통부 도심항공교통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(<http://www.molit.go.kr>) 정책자료→법령정보→입법예고·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○ 의견서 제출

- 의견제출자의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), 주소 및 전화번호

-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

제 · 개 정 안	수 정 안	의 견
		(찬·반 의견과 이유)

○ 보내실 곳

- 일반우편: (30103)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, 정부세종청사 6동
국토교통부 도심항공교통정책과(전화 044-201-4275, 팩스 044-201-5587)
- 전자우편: snhanna@korea.kr